



보도	2026.5.13.(수) 14:00	배포	2026.5.13.(수)
담당부서	서민금융보호국 서민금융보호총괄팀 검사1팀 검사2팀	책임자	국 장 송경용 (02-3145-8410)
		담당자	팀 장 이철진 (02-3145-8412)
			팀 장 김재흥 (02-3145-8250)
			팀 장 최종담 (02-3145-8255)

금감원, 대부업권 해킹사고 관련 CEO 간담회 개최 - 해커의 고객정보 탈취 시도에 대비하여 보안 수준 강화를 당부 -

I. 간담회 개요

□ 최근 대부업권에서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, 일부 고객정보까지 유출*됨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

* '26.3월 A사(43위), B사(22위) (()안은 '25년말 현재 금전대부업자 대출잔액 기준 순위)

- 이에 금융감독원은 '26.5.13.(수)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권(20개사)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금번 해킹사고의 유형 및 주요 원인을 안내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, 대부업권의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애로·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

대부업권 해킹사고 관련 CEO 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6. 5. 13. (수) 14:00 ~ 15:00
- ☑ 장 소 : 금융감독원 회의실
- ☑ 참석자 : (금감원·금보원)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, 서민금융보호국장, 금융보안원 담당자
(대부금융협회) 대부금융협회 전무, 기획부장
(대부업계) 상위 20개 대부업체 CEO

II. 대부업권 해킹사고 개요

- **(사고 경로)** 최근 대부업권 해킹사고는 직원이 업무용 PC로 외부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발생
 - 해커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통해 고객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DB 및 업무시스템 등에 접근 시도
 - 접근통제(방화벽 등)가 취약한 대부업체는 해커의 침입을 차단하지 못해 DB 등에 저장된 고객정보 유출 발생

- **(추가 범죄)** 해커는 고객정보 탈취 후 다크웹*에 판매글을 게시하거나, 언론 공개 등을 빌미로 대부업체를 협박하며 보상을 요구
 - * 일반적인 검색 엔진에는 노출되지 않고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가능한 웹 사이트로,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해 불법행위에 악용됨
 - 이외에도 고객들에게 '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'며 대부업체 명의로 피싱 이메일을 보내는 등 추가 범죄를 시도
 - ※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사칭한 피싱 이메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발령('26.3.26.)

- **(사고 원인)** 해커의 침투 시도에 침입차단·탐지시스템 등 보안 수준*이 취약한 대부업체의 보안이 뚫리면서 해킹사고가 발생
 - * 대부업권은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으로 보안대책† 수립·시행 의무가 있음
 - † 접근통제(접근권한 제한, 침입차단·탐지시스템 등), 접속기록 위·변조 방지, 개인신용정보 암호화, 악성 프로그램 침투 방지 등(신용정보법 §19①, 령 §16, 규정 §20)
 -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보안 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해킹사고의 근본 원인

Ⅲ. 주요 논의사항

□ **(금감원 당부사항)** 김형원 부원장보는 해킹사고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안 수준 강화를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이 당부하였음

①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 제한

-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PC의 SNS 및 인터넷 사이트(뉴스 검색 등) 접속을 엄격히 제한*

* 추가 해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악성코드 침투 시도를 원천 봉쇄

② 보안진단 실시 및 취약점 개선

- 상위 대부업체가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진행 중인 보안진단*에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

*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위 대부업체들이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보안진단을 우선적으로 실시 중

③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수립·시행 의무 준수

-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·탐지시스템 설치, 개인 신용정보의 암호화 등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

- 부실한 보안 조치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제재수준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보안역량 강화에 적극 나설 필요

* 보안대책 수립·시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누출시 기관 및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, 50억원 이하의 과징금 및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(신용정보법 §19①, §45⑦, §42의2①, §52②)

□ **(금보원 안내사항)** 금융보안원은 금번 해킹사고에서 확인된 사고 원인, 보안상 취약점, 유의 사항 등을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안내하면서 주의를 촉구하였음

- **(CEO 발언요지)**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업체 CEO들은 정보보안의 중요성 및 보안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,
 - 대부업체 임직원의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안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힘
 - 다만, 영세한 대부업체의 경우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감독당국과 대부금융협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
- **(협회 발언요지)** 대부업권의 정보보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힘

IV.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해킹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권에 보안 수준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
 - 추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 대부업체에 대한 보안 진단이 완료되는 대로 확인된 취약점 및 개선방안을 신속히 지도
- 또한, 대부업권의 신용정보법상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 수립·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,
 -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에 대한 이해도 및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설명자료를 마련할 예정
 - 향후 대부업체의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제재할 방침
- 한편, 대부업체의 해킹사고 발생 여파로 대부이용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